##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97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김도읍・이헌승・이달희

인요한 · 조배숙 · 구자근

정점식 · 신동욱 · 유상범

조지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 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 업자 등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구인광고 근 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거짓 구인광고 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 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구인광고 등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따른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4조의2(거짓 구인광고 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
	<u>짓</u>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
	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
	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
	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
	<u>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u>
	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
	용노동부에 구인광고 등 정보
	공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

<u>제34조의2</u>(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생 략) <신 설> 에게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 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 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